즉시 배포용: 2019 년 7 월 23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보복 포르노(REVENGE PORN) 유포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

새로운 법안은 주지사의 2019 년 여성 사법 어젠다(Women's Justice Agenda)의 핵심적인 성과를 나타내

Cuomo: "기술이 발전하고 가해자가 이를 사용해 친밀한 파트너를 괴롭히고 위협하며 모욕하는 데 비해 법률은 그에 맞춰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보복 포르노(revenge porn)의 유포를 금지함으로써, 이 악랄한 행위의 피해자들에게 가해자에 맞서 조치를 취할 권한을 주고 정의 실현의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오늘, "보복 포르노"의 유포 또는 사적인 영상의 비동의 공유와 유포를 금지하는 법안 S.1719C/A.5981 에 서명했습니다. 새로운 법안으로, 가해자의 경우 1 년 이하 징역의 형사처벌에 처하고 민사 배상을 부과하며, 피해자는 온라인 영상을 삭제하는 법원 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가해자가 이를 사용해 친밀한 파트너를 괴롭히고 위협하고 모욕하는 데 비해 법률은 그에 맞춰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보복 포르노의 유포를 금지함으로써, 이 악랄한 행위의 피해자들에게 가해자에 맞서 조치를 취할 권한을 주고 정의 실현의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 사법 어젠다(Women's Justice Agenda)의 일환으로, 여성에 대한 성차별과 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를 바꾸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으로 뉴욕 주민은 사적인 영상의 동의없는 유포로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며, 인터넷의 영상을 삭제할 조치를 취하고 가해자들을 수감시킬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최종적으로 진정한 사회, 경제, 인종 및 성별의 정의를 실현하려는 종합적인 목표를 위한 중요한 진전입니다."

구체적으로, 본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복 포르노"를 타인의 감정적, 재정적, 또는 신체적 복지를 해하려는 의도로 행하였으며, 해당 영상이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로 촬영한 사적인 영상을 불법 유포 또는 공개하는 범죄행위로 정의합니다.
- 사적인 영상의 불법 유포 또는 공개 행위를 A 급 경범죄로 분류합니다.

- 인권법(Civil Rights Law)을 개정하여 "보복 포르노" 피해자가 피해에 대한 민사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Monica R. Martinez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카운티 차원에서 지지할 수 있어 자랑스러웠으며, 오늘 동료들과 뜻을 함께해 주 차원에서 이 악랄한 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할 중대한 법안을 통과시켜 영광입니다. 이는 뉴욕주가 이러한 행위를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한 메시지이며, 이로써 피해자들이 폭력에 저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나서서 호소력 있는 이야기를 공유해주신 분들과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주신 지지 그룹에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Edward C. Braunstei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법안은 보복 포르노 유포를 A 급 경범죄로 분류하여, 이 부끄러운 행위에 관련된 자들의 처벌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뉴욕주는 미국에서 첫 번째로 피해자들이 웹사이트에 문제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법원 명령 청구권을 부여할 것입니다. 이 중요한 법안에 서명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지지해주신 피해자 인권 변호사 Carrie Goldberg, 가족을 위한 안식처(Sanctuary for Families), 사이버 인권 기구(Cyber Civil Rights Initiative), 사이버 성범죄 태스크 포스(Cyber Sexual Abuse Task Force)에도 감사드립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